

# 인지세 납부 안내

## 인지세 납부 안내

「인지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,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,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는 균등납부,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각각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(종이문서용) 원본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입하신 후 전자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인지 과세대상과 납부기한 ※ 인지세법 제1호, 제3조제1항 및 제8조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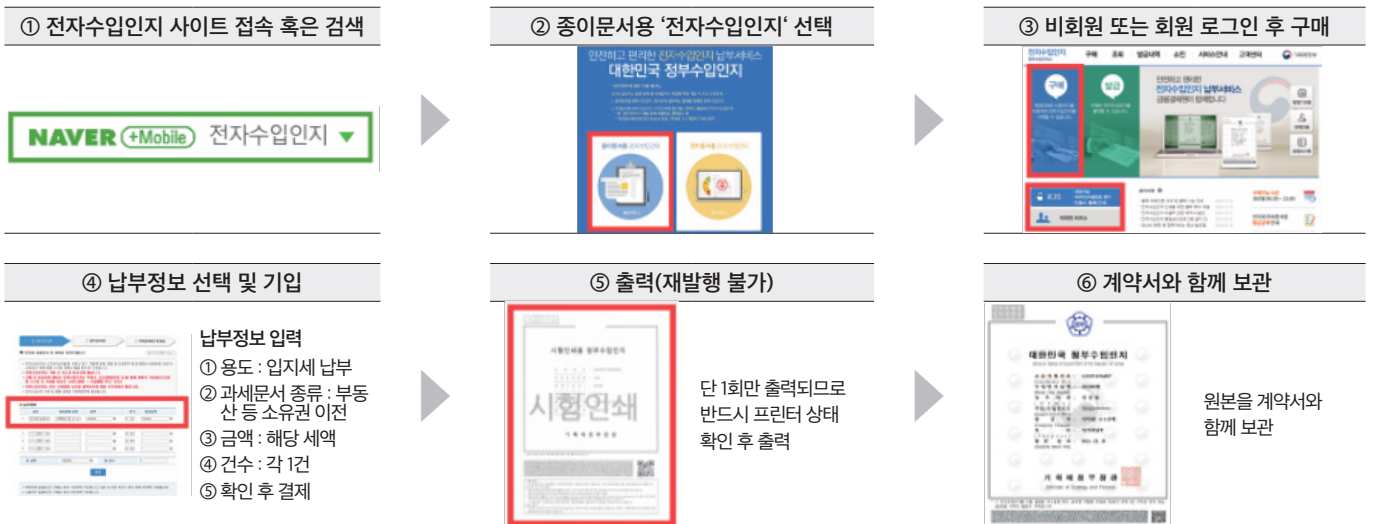
구분	내용
과세대상	- 「부동산 공급계약서」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임. - 「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서」는 인지세법 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임.
납부기한	-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※ 단,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중 「인지세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서 중 「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」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
수입인지 구입처	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구입 가능 ② 우체국·은행에서 구입 가능(방문 전 문의 요망)

## 인지세 납부 세액

구분	과세표준	세액	사업주체 부담	계약자 부담
공급계약	10억원 초과	35만원	17만 5천원	17만 5천원
발코니 확장+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	1천만원 초과~3천만원 이하	2만원	2만원	2만원
	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	4만원	4만원	4만원

※ 44A, 44B, 51A타입은 발코니 확장만 계약 시 「도급에 관한 증서」인 전자수입인지는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.  
 ※ 디 셀렉션 추가선택품목(III) 계약일정이 발코니 확장( I)+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(II)과 상이하여, 디 셀렉션 계약 시점에 추가선택( I + II + III)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에 구매한 정부수입인지 금액에서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정부수입인지를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.

##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



## 오프라인 인지세 구매방법

